

<의안번호 제2006-6호>

#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3. 8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상정일자 : 2006. 3. 17

### 2. 개정이유

- 읍·면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확산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-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 정비(안 제1조~제7조)
  - 읍·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·운영
  - 군수와 읍·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

-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(안 제7조, 제11조)
  - 주민자치센터 시설·프로그램 운영에 읍·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
-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(안 제17조, 18조, 20조)
  -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(중선거구제)에 따라 읍·면에서  
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
  -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

#### 4. 검토보고 요지

-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현실과 불부합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- 읍·면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을 확산하고,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, 또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